

# 유럽은 왜 미국으로 정보 전송하는 것을 우려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가?

-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EU-미국 Safe Harbor 무효 판결의 내용과 의의

## 1. 들어가면서

지난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는 15년간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의 적법성을 보장해 온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 협정(Decision 2000/520)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역사를 통틀어도 획기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과장이 큰 역사적 판결답게 판결이 내려진 후 각계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곳은 유럽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의 반응이다. 그들 중 하나(아일랜드 Data Protection Commissioner)는 이번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피고이기도 했지만,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회원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국 전송과 관련하여 해당 제3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기관이라고 판시하여 어떤 의미로는 이 판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들의 연합 조직인 WP 29는 이 판결의 의미를 '미국의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의 위법성'을 분명히 한 것이고,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므로 2016년 1월말까지 미국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가 개별적 조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은 정부의 감시활동으로 민간기업에게 큰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로 정치적 타협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역사적 판결답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곱씹어볼 의미도 많고, 많은 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유럽-미국 사이의 새로운 세이프 하버 협정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으로 하게 될지가 당장의 관심사가 되었다. 아울러 최근 제정과정에 있는 유럽연합의 통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도 해외 사업자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외 사업자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도 점점 뜨겁게 논의될 것이다.

눈을 우리나라로 돌리면, 유럽연합에서는 미국의 대량감시나,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글로벌 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의 실태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 2.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한 규율과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 결정

### 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제3국 이전에 관한 규율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이 되는 지침(Directive)를 제정하여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 중 유럽연합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에 이전되는 것과 관련한 규율은 Directive 95/46/EC<sup>1</sup>에 두고 있다.

이 지침(Directive 95/46/EC)은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을 제4장(Chapter 4)에서 제25조, 제26조의 두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침(Directive 95/46/EC)은 그 원칙으로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은 본 지침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해당 제3국이 개인정보를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한다고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제25조 제1항).<sup>2</sup> 이 규정의 입안자들이 이 규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될지 어느 정도까지나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이 규정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지침은 아울러 회원국에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3국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3국으로 동일한 형태의 정보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4항).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분명하게(unambiguously) 동의한 경우,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계약 체결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 사이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요한 공익적 근거에 기초하거나 법률적 청구를 제기, 수행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전 등인 경우이다(제26조 제1항).

한편 지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충분성 심사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국내법, 제3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 제3국과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제3국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5조 제6항). 이 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Andorra, Argentina, Canada (상업 조직), Faeroe Islands, Guernsey, Israel, Isle of Man, Jersey, New Zealand, Switzerland, Uruguay,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 프라이버시 원칙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유럽 - 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은 이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sup>1</sup> 정식 명칭은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1995 L 281, p. 31)

<sup>2</sup>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

## 나.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0/520)<sup>3</sup>

미국의 경우는 유럽연합과 달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이 없이 영역별로 파편적인 법률을 두고 있으며, 통합적인 감독, 침해 조사, 시정조치 명령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각 규정의 수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지침 25조 제1항에 의할 경우 제3국 이전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 지침 제25조 제6항에 의해서, 특히 미국의 상무성이 제정한 ‘세이프 하버 프라이버시 원칙’ 등을 준수하기로 약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충분성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2000년에 이루어졌다(Commission Decision 2000/520).

###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 가. 유럽사법재판소 소송의 당사자

이 사건의 원고는 오스트리아의 Max Schrems(28)라는 사람이다. Max Schrems는 로스쿨을 졸업했고, 현재는 비엔나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한다. 그는 2012년부터는 ‘europe-v-facebook.org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실현을 위한 협회’라는 이름의 오스트리아 비영리 단체의 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2008년부터 페이스북을 이용했다고 한다.<sup>4</sup>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DPC, Helen Dixon.)이다.

####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에 대한 페이스북 관련 청구와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sup>5</sup>

(1)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Irish Data Commission)에게 페이스북의 위법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시정 청구(claim)

원고는 오랫동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와 폐쇄적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원고 등은 페이스북의 문제점에

---

<sup>3</sup> 정식 명칭은 Commission Decision 2000/520/EC of 26 July 2000 pursuant to Directive 95/46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safe harbour privacy principles and rela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OJ 2000 L 215, p. 7).

<sup>4</sup> 그의 트위터 계정은 <https://twitter.com/maxschrems> 이다.

<sup>5</sup> 원고의 소송은 크라우드 펀딩의 형식으로 기증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www.crowd4privacy.org](http://www.crowd4privacy.org))에서 2,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60,000유로 이상을 기증했다고 한다. [http://www.europe-v-facebook.org/PA\\_ecj\\_date\\_en.pdf](http://www.europe-v-facebook.org/PA_ecj_date_en.pdf)

대해 일련의 법적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 내용은 이들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europe-v-facebook.org/>)에 잘 정리되어 있다.

**Legal Procedure against "Facebook Ireland Limited"**

For years the shortcomings of Facebook's privacy practice have been discussed, thought and talked about. Besides a couple of individual law suits there have been almost no consequences. Oftentimes we read that Facebook is a US company and therefore we cannot do too much within Europe. Are you sure?

"If you are a resident of or have you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US or Canada, this Statement is an agreement between you and Facebook, Inc. Otherwise, this Statement is an agreement between you and Facebook Ireland Limited. References to "us," "we," and "our" mean either Facebook, Inc. or Facebook Ireland Limited, as appropriate."

(Facebook's Terms, Chapter 18. "Other")

(원고 등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http://www.europe-v-facebook.org/>)

그래서 원고 등은 페이스북의 유럽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개인 정보 보호위원장에게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1년 8월 18일과 2011년 9월 19일에 모두 22가지 점에 대한 22건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22건의 청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대한 22건의 청구의 정리(출처 [www.europe-v-facebook.org](http://www.europe-v-facebook.org))

1	<b>Pokes.</b> Pokes are kept even after the user "removes" them.
2	<b>Shadow Profiles (Big Data).</b> Facebook is collecting data about people without their knowledge. This information is used to substitute existing profiles and to create profiles of non-users.
3	<b>Tagging.</b> Tags are used without the specific consent of the user. Users have to "untag" themselves (opt-out). <i>Info: Facebook <a href="#">announced</a> changes.</i>
4	<b>Synchronizing.</b> Facebook is gathering personal data e.g. via its iPhone-App or the "friend finder". This data is used by Facebook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s.

5	<b>Deleted Postings.</b> Postings that have been deleted showed up in the set of data that was received from Facebook.
6	<b>Postings on other Users' Pages.</b> Users cannot see the settings under which content is distributed that they post on other's pages.
7	<b>Messages.</b> Messages (incl. Chat-Messages) are stored by Facebook even after the user "deleted" them. This means that all direct communication on Facebook can never be deleted.
8	<b>Privacy Policy and Consent.</b> The privacy policy is vague, unclear and contradictory. If European and Irish standards are applied, the consent to the privacy policy is not valid.
9	<b>Face Recognition.</b> The new face recognition feature is an inproportionate violation of the users right to privacy. Proper information and an unambiguous consent of the users is missing.
10	<b>Access Request.</b> Access Requests have not been answered fully. Many categories of information are missing.
11	<b>Deleted Tags.</b> Tags that were "removed" by the user, are only deactivated but saved by Facebook.
12	<b>Data Security.</b> In its terms, Facebook says that it does not guarantee any level of data security.
13	<b>Applications.</b> Applications of "friends" can access data of the us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se applications are following European privacy standards.
14	<b>Deleted Friends.</b> All removed friends are stored by Facebook.
15	<b>Excessive processing of Data.</b> Facebook is hosting enormous amounts of personal data and it is processing all data for its own purposes. It seems Facebook is a prime example of illegal "excessive processing".
16	<b>Opt-Out.</b> Facebook is running an opt-out system instead of an opt-in system, which is required by European law.
17	<b>Like Button.</b> The Like Button is creating extended user data that can be used to track users all over the internet. There is no legitimate purpose for the creation of the data. Users have not consented to the use.
18	<b>Obligations as Processor.</b> Facebook has certain obligations as a provider of a "cloud service" (e.g. not using third party data for its own purposes or only processing data when instructed to do so by the user).
19	<b>Picture Privacy Settings.</b> The privacy settings only regulate who can see the link to a picture. The picture itself is "public" on the internet. This makes it easy to circumvent the settings.
20	<b>Deleted Pictures.</b> Facebook is only deleting the link to pictures. The pictures are still public on the interne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ore than 32 hours).
21	<b>Groups.</b> Users can be added to groups without their consent. Users may end up in groups that lead other to false impressions about a person.
22	<b>New Policies.</b> The policies are changed very frequently, users do not get properly informed, they are not asked to consent to new policies.

(2)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PRISM 폭로와 그에 따른 23번째 청구서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미국정부가 프리즘(PRISM)으로 대량 감시행위를 하고 있다는 폭로를 하여, 언론에 보도가 된 후, 원고는 2013년 6월 26일에 23번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유럽과 미국의 세이프 하버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중 2013년 6월 26일에 23번째 청구로 제출한 프리즘(PRISM)과 관련된 청구였다. 나머지 22가지의 청구의 내용은 위 웹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sup>6</sup>

원고는 프리즘과 관련하여 제출한 7페이지의 청구서에서 유럽연합의 미국에 대한 세이프하버 결정은 위법하므로 미국으로의 정보 전송을 금지시켜 달라고 신청하였다. 원고는 그 근거로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스카이프, AOL 등과 함께 페이스북도 PRISM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미국 정부도 스노우든의 폭로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PRISM을 통한 대량 감시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The slide is titled "PRISM Collection Details" and features a "SPECIAL SOURCE OPERATIONS" logo on the left and a "PRISM" logo on the right. At the top, it lists various providers: Microsoft (Hotmail, etc.), Google, Yahoo!, Facebook, PalTalk, YouTube, Skype, AOL, and Apple. A large green arrow points from the list of providers to a box detailing the collection. The collection details include: E-mail, Chat – video, voice, Videos, Photos, Stored data, VoIP, File transfers, Video Conferencing, Notifications of target activity – logins, etc., Online Social Networking details, and Special Requests. The slide also includes the text "Complete list and details on PRISM web page: Go PRISMFAA" and "TOP SECRET//SI//ORCON//NOFORN" at the bottom.

TOP SECRET//SI//ORCON//NOFORN

Gmail facebook msn Hotmail® Google® skype® paltalk.com YouTube AOL mail

(TS//SI//NF) PRISM Collection Details PRISM

SPECIAL SOURCE OPERATIONS

Current Providers

- Microsoft (Hotmail, etc.)
- Google
- Yahoo!
- Facebook
- PalTalk
- YouTube
- Skype
- AOL
- Ap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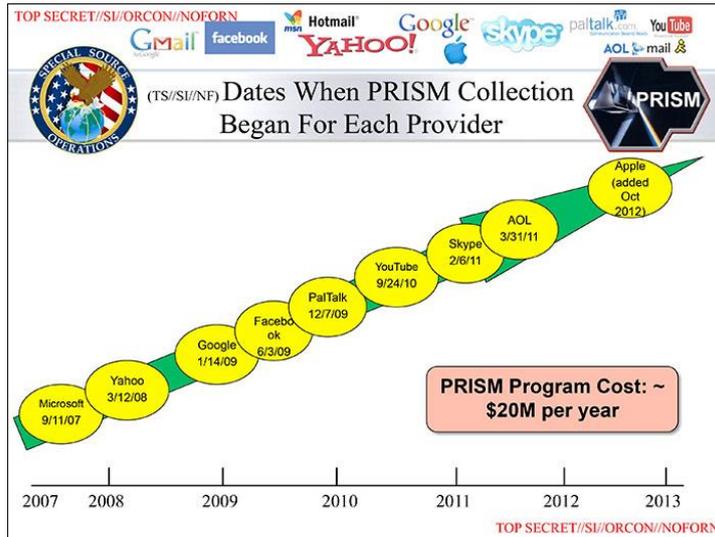
What Will You Receive in Collection (Surveillance and Stored Comms)?  
It varies by provider. In general:

- E-mail
- Chat – video, voice
- Videos
- Photos
- Stored data
- VoIP
- File transfers
- Video Conferencing
- Notifications of target activity – logins, etc.
- Online Social Networking details
- **Special Requests**

Complete list and details on PRISM web page:  
Go PRISMFAA

TOP SECRET//SI//ORCON//NOFORN

<sup>6</sup> <http://www.europe-v-facebook.org/EN/Complaints/complaints.html>



원고는 미국에서 프리즘의 대중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국은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세이프 하버도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페이스북도 프리즘 프로그램에 의해 NSA의 대중감시 대상이 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면서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미국을 통해 데이터를 NSA에게 전달하는데, 이렇다면 데이터의 이전이 충분한 보호(adequate protection)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To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Canal House, Station Road  
Portarlinton , Co. Laois  
IRELAND

Maximilian Schrems  
[REDACTED]  
[REDACTED]  
AUSTRIA

Vienna, June 25<sup>th</sup> 2013

**Complaint against Facebook Ireland Ltd – 23 “PRISM”**

To whom it may conc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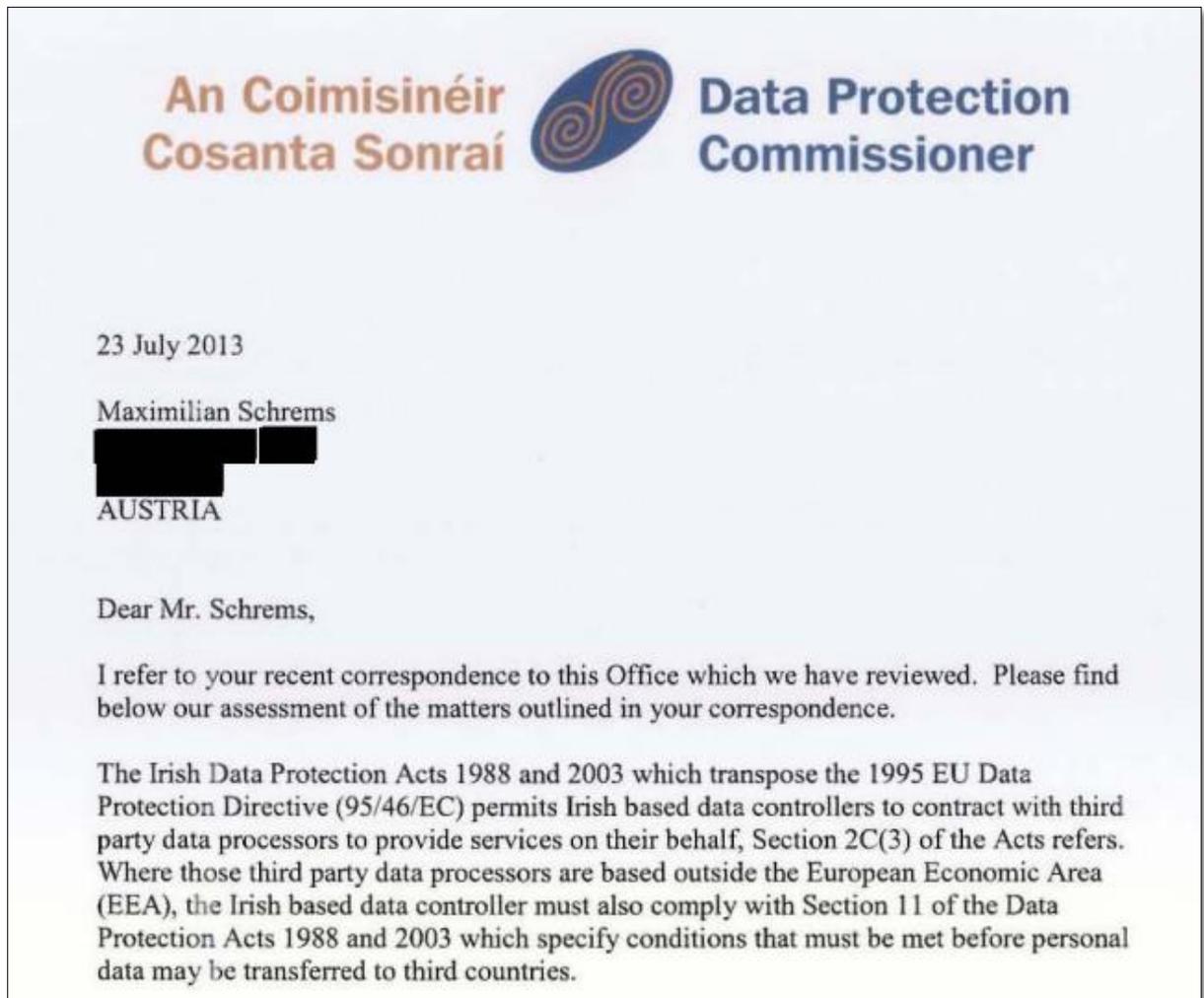
This is a formal complaint against “Facebook Ireland Ltd” under section 10 of the Irish DPA and at the same time also a request for a formal decision by the DPC. There is probable cause that “Facebook Ireland Ltd” is breaking the Irish DPA and the underlying Directive 94/46/EG and I kindly ask you to investigate the following complaint, inform me about your findings and make a legally binding decision after a conducting fair trial.

(원고가 2013년 6월 25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에게 제출한 23번째 프리즘과 관련한 신청서)

(3)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의 기각 결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

그런데 청구서가 접수된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3년 7월 23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은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은 기각 이유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0년 7월 26일의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0/520/EC)<sup>7</sup>에서 미국의 기업이 세이프하버 7원칙과 첨부된 FAQ 등을 준수하겠다고 하고 세이프 하버에 가입을 하고, 해당 기업이 세이프 하버 원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해당 기업은 개인정보의 제3국 전송이 허용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보호(adequate protec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 페이스북은 세이프 하버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한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의 원고의 신청에 대한 기각 통지)

<sup>7</sup> 정식 명칭은 Commission Decision 2000/520/EC of 26 July 2000 pursuant to Directive 95/46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safe harbour privacy principles and rela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OJ 2000 L 215, p. 7)

이에 원고는 2013년 10월 24일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의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일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은 2014년 3월 29일에 공판(hearing)을 열었고, 소송제기 후 약 8개월만인 2014년 6월 18일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유럽연합의 법률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법률의 해석을 구하는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는 중간판결(interlocutory judgment)을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실판단을 하는 법원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사실판단에 대한 것은 아일랜드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중간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률의 해석을 물은 것이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이 선결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아일랜드 법률은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은 아일랜드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제한은 비례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아일랜드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 가치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개인정보 수집, 취득, 정보통신에 대한 감청,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의 사람들에 대한 감시 등은 국가 안보나 범죄의 진압 등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충분한 수준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Schrems의 청구가 있는 한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은 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만약 국가기관이 범죄 진압의 목적으로 정보통신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Decision 2000/520이 유럽연합 헌장 7조나 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럽연합 법률의 관점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Schrems의 청구는 Decision 2000/520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과><sup>1</sup>

2013. 6. 26.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에게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대한 신청 제출

2013 7. 25.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은 신청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 그 청구를 하찮고 성가신 것(“frivolous and vexatious”, Section 10(1)(b)(i) DPA)으로 봄.

2013. 10. 24.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 청구함.

2014 3. 29.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공판(Hearing)

2014 6. 18 중간 판결(Interlocutory Judgment), 유럽사법재판소에 쟁점에 대한 선결 판결 신청(Reference to the ECJ for a preliminary ruling)

2015. 3. 24 유럽사법재판소 대심판부(Grand Chamber)의 공판(Hearing)

2015 9. 23. AG 의견서 제출.

2015. 10. 6. 판결

####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가.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조와 판결의 효력

애초 1952년 파리조약에 의해 설립되었던 유럽사법재판소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의 발효에 의해 유럽사법재판소로 명칭도 변경되었고, 유럽연합의 법률에 대한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 항소할 수가 없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개별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총 28명의 재판관이 있고, 재판관을 보조하여 배당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을 갖는 8명의 법무감(Advocate General)이 있다. 재판관은 법무감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무감의 의견은 다수견해로 채택된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프랑스에서 임명된 Yves Bot가 법무감으로 선임되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사건에 따라서 3인, 5인으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대심판부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15명의 대심판부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졌다.

##### 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재판의 경과와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15인의 대심원에서 사건을 담당하였고, 법무감으로는 프랑스의 Yves Bot가 맡게 되었다. 2015년 3월 24일에는 유럽사법재판소의 대심판부에서 공판(Hearing)이 이루어졌다.

2015년 9월 23일에는 이 사건의 담당 법무감인 Yves Bot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 10월 6일 오전 10시 판결이 선고되었다.

СЪД НА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ÓN EUROPEA  
SOUDNÍ DVŮR EVROPSKÉ UNIE  
DEN EUROPÆISKE UNIONES DOMSTOL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EUROOPA LIIDU KOHUS  
ΔΙΚΑΣΤΗΡΙΟ ΤΗΣ ΕΥΡΩΠΑΪΚΗΣ ΕΝΩΣΗΣ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CÚIRT BHRÉITHIÚNAIS AN AONTAIS EORPAIGH  
SUD EUROPSKE UNĚE  
CORTE DI GIUSTIZIA DELL'UNIONE EUROPEA



EIROPAS SAVIENĪBAS TIESA  
EUROPOS SAJUNGOS TEISINGUMO TEISMAS  
AZ EURÓPAI UNIÓ BÍRÓSÁGA  
IL-QORTI TAL-ĠUSTIZZJA TAL-UNJONI EWROPEA  
HOF VAN JUSTITIE VAN DE EUROPESE UNIE  
TRYBUNAŁ SPRAWIEDLIWOŚCI UNII EUROPEJSKIEJ  
TRIBUNAL DE JUSTIÇA DA UNIÃO EUROPEIA  
CURTEA DE JUSTIȚIE A UNIUNII EUROPENE  
SÚDNY DVOR EURÓPSKEJ ÚNIE  
SODIŠČE EVROPSKE UNIJE  
EUROOPAN UNIONIN TUOMIOISTUIN  
EUROPEISKA UNIONENS DOMSTOL

##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6 October 2015 \*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 Personal data —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such data —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 Articles 7, 8 and 47 — Directive 95/46/EC — Articles 25 and 28 —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 Decision 2000/520/EC —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e United States — Inadequate level of protection — Validity — Complaint by an individual whose data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European Union to the United States — Powers of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Case C-362/14,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under Article 267 TFEU from the High Court (Ireland), made by decision of 17 July 2014, received at the Court on 25 July 2014, in the proceedings

**Maximi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joined party:

**Digital Rights Ireland Ltd,**

THE COURT (Grand Chamber),

composed of V. Skouris, President, K. Lenaerts, Vice-President, A. Tizzano, R. Silva de Lapuerta, T. von Danwitz (Rapporteur), S. Rodin and K. Jürimäe, Presidents of Chambers, A. Rosas, E. Juhász, A. Borg Barthet, J. Malenovský, D. Šváby, M. Berger, F. Biltgen and C. Lycourgos, Judges,

(이 사건의 판결문 1페이지)



(판결이 내려진 직후 Max Schrems의 트위터)

## 다. 쟁점에 대한 판결

### (1) 개인정보 제3국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권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결의 첫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개인정보 제3국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제3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유럽위원회가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다면 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가 그 판단에 구속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개인정보 제3국 이전과 관련하여 제3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adequate protection)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은 제3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위원회의 결정이나 판단이 있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2)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Decision 2000/520) 제1조 관련한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위원회의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Directive 95/46의 25조 제1항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하지 않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충분한 수준의 보호’는 그 보장 수준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 평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 25조 제6항에 의한 판단을 한 이후에도 항상 그 이후 나타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비추어 그 평가는 유럽연합 인권헌장의 관점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Decision 2000/520의 각 조항과 그 부록에 대해 검토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유럽-미국 세이프 하버 결정인 Decision 2000/520의 1조가 미국 상무성이 발표하고, 부록으로 첨부된 세이프 하버 프라이버시 원칙과 FAQ가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첨부된 Annex I의 두 번째 단락과 Annex 4의 Part B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Annex I의 두 번째 단락은 세이프 하버 원칙의 적용이 국가 안보, 공공 이익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세이프 하버 원칙과 위배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허가를 부여하는 법률, 정부 규정,

관례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와 같은 허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세이프 하버 원칙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nex4의 Part B는 세이프 하버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의 법률이 세이프 하버와 모순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기관이나 기업들은 세이프 하버를 준수하기로 한 곳이든 아니든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Decision 2000/520은 세이프 하버의 원칙에 대해 국가안보, 공공 이익, 법률 집행의 필요가 제한 없이 우선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민감한 정보인지나 그로 인해 해당 정보주체가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Decision 2000/520은 개인정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미국에서 어떤 법률을 채택할 때에도 국가나 기업, 기관이 국가안보와 같은 적법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아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FAQ 11에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으로 언급하고 있는 FTC는 상업적인 분쟁에만 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사적 분쟁 해결기관이나 조식도 국가로부터 취해지는 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을 다루지는 못한다.

게다가 이런 것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평가(Communication COM(2013))이며,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국가기관들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는 최초로 수집될 당시에 제시한 수집목적과는 다른 것이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필요하고, 비례성을 충족하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주체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절차나 사법절차에서도 개인정보의 접근, 수정, 삭제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본권 제한은 유럽연합의 법제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엄격하게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무차별적이고, 제한이나 예외도 없는 모든 이용자의 정보 저장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이미 Directive 2006/24/EC에 대해서 무효라는 판결(Digital Rights Ireland and Others, C-293/12, C-594/12, EU:C:2014:238)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유럽사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적법 절차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적하고 있다(Les Verts v Parliament, 294/83, EU:C:1986:166 판결 등).

유럽사법재판소는 95/46/EC의 제25조 (6)에 의해 보호수준의 충분성을 평가하려면 유럽연합의 법적 보호의 수준에 상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인 Decision 2000/520은 무효라고 보았다.

### (3)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Decision 2000/520) 제3조 관련한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제3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Directive 95/46/EC 제28조 등은 개인정보감독기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권한이나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사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Decision 2000/520의 제3조는 유럽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25조 6항의 판단을 하고, 개인정보를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과 관련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3조는 유럽연합국가의 개인정보감독기구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경우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권한을 보장한 Directive 95/46/EC의 28조를 25조 (6)항에 의거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 (4)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Decision 2000/520)에 대한 종합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Decision 2000/520) 제1조와 제3조는 제2조, 제4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유럽-미국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Decision 2000/520) 전부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5.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영향

#### 가. 아일랜드 고등법원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2015년 10월 20일에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게 유럽연합 이용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이날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청장이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모든 조사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 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의 조직인 29조 작업반(WP 29)

한편 29조 작업반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후인 2015년 10월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성명에서 WP 29는 미국의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WP 29는 이와 같은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는 유럽연합의 법률 구조와 양립할 수 없으며, 현재의 구조(세이프 하버 등)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밝혀 왔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기관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제3국은 개인정보 이전의 안전한 이전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대하여 폭 넓은 분석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WP는 유럽연합의 각국과 유럽연합의 기관들이 미국 당국과 즉각 정치적이고, 합법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이 유럽연합의 정보주체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부간 협정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세이프 하버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도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기대하였다. 이런 해결책은 최소한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에 대해 필요한 감시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투명성, 비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무, 보상 메커니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포함한 항상 명확하고 강행성이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WP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영향과 다른 개인정보 이전 방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계속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BCR과 SCC는 계속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정보주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만약 2016년 1월까지 적절한 해결책을 미국 당국과 합의하지 못하고, WP에 의하여 이전 수단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강제적 수단

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세이프 하버에 대한 결정 이후에도 세이프 하버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당 주체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럽연합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적절한 공지 캠페인을 벌이고, 모든 회사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웹사이트를 통한 메시지 전파 등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기업 등은 적절한 법률적, 기술적 수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다. 미국

미국 정부는 상무부장관이 판결이 내려진 2015년 10월 6일 당일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면서 짧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U-미국의 세이프 하버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그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세이프 하버 사이트에는 판결 소식을 알리면서 상무성이 당분간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을 관리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sup>8</sup>



(미국 세이프하버 사이트에는 공지사항이 올라 있음)

### 라. 예상되는 조치나 영향

유럽의 각국에서 개인정보감독기구에 미국의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에 정보를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그 이용자들이 요청할 경우 즉각 그에 대한 조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당국에게 무차별적이고 대량적인 감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요청도 다수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 마. 이 판결 후 당장 유럽 이용자들의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럽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세이프 하버가 무효로 판단된 만큼 세이프 하버에 의존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더 이상 적

<sup>8</sup>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5/10/statement-us-secretary-commerce-penny-pritzker-european-court-justice>

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동의를 받거나,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미국으로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한편 BCR이나 SCC를 이용하는 방법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규율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이 판결 이전에도 클라우드 컴퓨터나 금융권의 금융개인정보 등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다양한 규율과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국이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이전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법원의 태도는 불명확하고, 규제 당국의 개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 **6. 판결의 의미**

#### **가. 미국의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의 합법성에 대한 현실적 문제제기**

이 판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주체는 미국이 될 것이다. WP 2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미국에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부합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 이후 이어졌던 미국의 대량 감시 시스템인 프리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미국이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묶인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 **나. 각국의 법률과 국제조약 등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은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법률이나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게는 이 판결이 갖는 경제적 의미가 클 것이다.

한편 이 판결은 외국인에 대한 감시의 적법절차 보장이나, 그 적법성의 한계나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 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규모, 유럽연합이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보다 현실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 **다. 미흡하다고 평가되던 EU-미국 세이프 하버의 개선**

당장 유럽연합의 측면에서는 제정 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현저하게 미달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던 EU-미국의 세이프 하버를 그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프리즘 프로그램의 폭로를 계기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제기하였던 EU-미국의 세이프 하버의 개정 요구와 협상에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존의 결정(Decision 2000/520)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그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판단, 평가할

수 있다는 이 판결에 의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향후 진행될 세이프 하버 개정의 결과물이 어느 선까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접한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이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며, 엄격한 해석이어야 한다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부단히 그 수준이 올라갈 것임은 분명하다.

#### **라. 개인정보 이전국의 개인정보 법제에 대한 각국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적 판단권한 확인**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법제를 각국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여러 국가의 개인정보 법제가 유럽 수준의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지 유럽의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의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 **마.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 독립성,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 다양한 방면의 규범의 발전**

이번 판결에서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가 주된 초점이었고, 그와 관련한 적법 절차 보장, 권리구제 수단, 비례성이나 필요성의 원칙을 비롯한 권리보호 조치들이 쟁점이었는데, 앞으로는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나 권한,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과 같은 점에서도 그것이 유럽연합 수준의 충분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그런 수단이 불비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기본적 권리나 자유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쟁점으로 한 판단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7. 우리나라의 경우**

#### **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제3국 이전에 대한 보호수준의 충분성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달리 개인정보 제3국 이전과 관련해서 보호수준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수준에 부응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는 중대한 결함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럽연합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다.

#### **나. 국외 기업의 개인정보 법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도 없고, 규제당국의 실천의지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제를 위반했을 때 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 부족하다. 국외 기업이라도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규제 당국은 실천의지가 없다.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미국 '세이프하버'의 무효를 선언했다.

: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  
Judgment in Case C-362/14 Maximi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 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바 있으므로, 각국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감독기구들은 개인정보의 제 3 국 제공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당인이 관련된 한, 감독기구는 국내 법원이 그 결정의 효력을 심의하는 목적에서 사전 판결을 내리게끔 국내 법원에 관련된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sup>9</sup>은 개인정보를 제 3 국에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국이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제 3 국이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 규정에 따라 국내규정의 영토내 적용을 감시하는 하나 이상의 공공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시민 막시밀리안 슈렘스는 2008 년부터 페이스북 이용자이다.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다른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슈렘스씨가 페이스북에 제공한 일부 혹은 전부의 정보가 페이스북의 아일랜드 지사로부터 미국에 위치한 서버로 전송되어 처리되었다. 슈렘스씨는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개인정보보호청장)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미국 정보기관(특히 NSA, 국가안보국)의 활동에 관한 2013 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미국법과 관행이 공공기관의 감시로부터 이 국가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아일랜드 감독당국은, '세이프하버' 제도<sup>10</sup>에 따라 미국이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00 년 7 월 26 일 결정(세이프하버 결정)<sup>11</sup>을 근거로 진정을 각하하였다.

<sup>9</sup>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 1995년 10월 24일 95/46/EC 지침.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개인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하여 다룸(OJ 1995 L 281, p. 31).

<sup>10</sup> 세이프하버 제도는 미국 사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원칙들을 담고 있음

<sup>11</sup> 2000년 7월 26일 2000/520/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 95/46/EC 지침에 의하여 세이프하버 프라이버시 원칙과 미 상무부가 자주 제기하는 질의 조항과 관련한 적절성에 대하여 다룸(OJ 2000 L 215, p. 7).

이 사건이 접수된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제 3 국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조사하는 것과 논란이 된 개인정보 전송을 적절히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세이프하버]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길 희망하였다.

오늘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과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해, 제 3 국이 전송된 개인정보의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는 **집행위원회 결정의 존재가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권한을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권헌장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와 헌장에 따라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에 부여된 소임에 대해 강조했다.

재판소는 무엇보다 지침의 어떠한 규정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 사안인 제 3 국 개인정보 전송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가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진정사항을 다루게 되는 국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인정보의 제 3 국 전송이 지침상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 결정과 같은 유럽연합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재판소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재판소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진정을 제기하는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집행위원회 결정이 무효라고 생각할 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 역시 결정의 효력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 이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집행위원회 결정의 효력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법재판소이다.**

그래서 재판소는 세이프하버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위와 같은 관련성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기본권장전을 고려한 지침에 의해 보장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기본권의 보호 수준을 사실상 보장하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재판소는 말한다. 재판소는 집행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세이프하버 제도만 검토했다고 보았다.

이 제도가 유럽연합 내에서 보장받는 바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규명할 필요성이 없었기에, 이 제도는 이를 준수하는 사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고, 미국의 공공기관 자체가 그것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소는 보았다. 나아가, 미국 정보·수사기관들의 요구는 세이프하버 제도를 압도하였고, 미국 사업체들은 **이러한 요구들과 이 제도에 규정된 보호 규칙들이 충돌될 때 후자를 제한 없이 무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 세이프하버 제도는 미국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간섭을 가능케 했고, 세이프하버 결정은 미국 내에서 그런 간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나 그런 간섭에 대해 유효한 법적 보호의 존재를 참조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 제도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집행위원회 내 두 가지 평가에 의거한다고 본다.<sup>12</sup>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전송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국가 안보 보장에 반드시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범위를 넘어,

---

<sup>12</sup> '유럽-미국 간 정보 흐름에 관한 신뢰 재수립' 제하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로 전달된 평가(COM(2013) 846 final, 2013년 11월 27일)과, 유럽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세이프하버의 기능에 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로 전달된 평가(COM(2013) 847 final, 2013년 11월 27일).

전송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특히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인 시정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집행위원회는 언급한 바 있다.

유럽 내에서 보장되는 기본권 및 자유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수준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법률에 따른 입법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전송되는 **모든 개인의 모든 개인정보의 보관을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허용할 경우에**, 즉 목적에 따른 차별, 제한이나 예외가 없이,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그 이후 사용에 대한 제한을 결정하기 위해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허용할 경우에, [그 입법의 범위가] **반드시 필수적인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재판소는 판단했다. 재판소는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이 일반적 기준에 의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본권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기 위해 법적 구제수단을 구하는 개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입법은 **유효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판소는 보았다. 그러한 수단의 존재가 **법에 의한 지배의 존재에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마지막으로 세이프하버 결정은, 이 결정이 프라이버시와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보호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이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그에 대한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와 그 권한을 부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내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권한을 그런 방식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에 의해, 재판소는 세이프하버 결정이 **무효**라고 선언한다. 이 판결은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슈렘스씨의 진정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할 것과,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 해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 유럽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정지시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결론이다.

- ECJ 판결문

<https://cdt.org/files/2015/10/schrems.pdf>

- ECJ 보도자료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10/cp150117en.pdf>